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27호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자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년 5월 10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성진	7406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3동 52호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2. 서류의 명칭 :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 (1) 우리 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귀하에 대해 '직무정지 3월'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 (2) 귀하는 위의 조치예정내용에 관하여 2017.5.24.까지 금융위원회 자산 운용과(참조 : 이선희사무관, **☎**2100 267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기일 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 음 -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주성진	- 금융투자업자는 해산을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투자자문㈜은 2014.12.16.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하면서도 사	제33조 제1항	직무정지 3월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투자업자는 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6개월· 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 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투자자문㈜은 2013.10월~2016.2월까지 기간에 대한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29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입업자는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투자자문㈜은 2014.9.29. 주요주주 OOO이 보유하던 동사주식(지분율 10%) 전부를 △△△에게 양도함에따라 주요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2016.4.7. (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아니하였고, 2015.9.22. 최대주주 □□□가 보유하던 동사주식(지분율 30%) 전부를 ◇◇◇에게 양도함에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1%p 이상 변동되었는데도 동사실을 2016.4.7. (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투자자문㈜은 2014.2.25. 전 이사 ●●를 해임하였고, 2014.2.28. 감사 ■■■, 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투자업자는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는 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는 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는 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는 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는데도, ■■투자자문㈜은 2013.11.1. 주된 영업	및 세3항, 제418조, 제4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370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371조 제1항 및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3-70조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정지 및 본점 영업의 중지 사실을 각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4.3.25.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 업 전부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투자업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하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투자자문㈜은 2014.12.16.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00-26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7]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의견제출인 주소		년	월	일 (전화 :)	
기산세월 한 기도 성명					· 또는 인)		,	
						刊	<u>ज</u>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힘 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에 함			